

## 절차상의 안전 조치

### 1973년 재활법 504 조항

학부모는 제 504 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절차상의 안전 조치의 목적은 귀하에게 이러한 권리를 알리는 것입니다.

귀하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:

1. 자녀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공공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;
2. 자녀의 장애 식별, 평가 또는 배치에 관한 통지를 받습니다;
3. 자녀가 개별화된 평가를 받고,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과 평가 데이터 및 배치 옵션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 평가, 교육 및 배치 결정을 받도록 합니다;
4. 자녀가 재활법 504 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자녀가 학교, 학교 관련 및 과외 활동에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구로 하여금 필요한 편의/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;
5. 자격이 되는 경우, 자녀가 무료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, 장애 학생의 필요를 비장애 학생의 필요만큼 적절하게 충족하도록 설계된 정규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여기에는 적절한 최대 범위까지 비장애 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;
6. 자녀가 비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에 준하는 시설에서 교육받고 서비스를 받도록 합니다;
7. 교육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학생이 배치되는 경우보다 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교육구에서 결정한 대체 배치 환경으로의 왕복 교통편을 제공받습니다;
8. 자녀가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받습니다;
9. 자녀의 장애 식별, 평가, 교육 프로그램 및 배치에 관한 결정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, 수수료가 부담되어 기록 열람을 포기할 정도의 형편이 아닌 이상, 합당한 비용으로 교육 기록 사본을 받습니다;

10. 장애 차별에 대한 청구는 차별 발생 6개월 이내에 지역 민원을 제기합니다. 교육구 웹사이트 [www.iusd.org](http://www.iusd.org) 에 있는 교육구 균일 불만 처리 정책 (이사회 방침 1312.2) 을 참조하십시오;

11. 자녀의 장애 식별, 평가, 교육 프로그램 또는 배치와 관련된 결정 또는 조치와 관련된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귀하와 학생은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귀하의 비용 부담으로 고용한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. 공정한 청문관은 교육구에서 선정합니다. 공정한 청문회 결정에 대한 항소는 연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청문회 요청은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**60 일 이내에** 504 조항 준수 책임자인 Tim Tatum 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. 교육구의 적법 절차 청문회 절차는 교육구 504 조항 준수 책임자에게 학부모/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됩니다.

12. 이 통지는 또한 이러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 만 18 세 학생에게도 제공됩니다.

13. 교육구가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인권 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 사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:

OFFICE FOR CIVIL RIGHTS  
U.S. Department of Education, SF Office  
50 United Nations Plaza  
San Francisco, Ca. 94102

교육구 504 조항 준수 책임자는 팀 타툼 (Tim Tatum) 씨입니다. 책임자는 교육구가 504 조항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자 연락처는 (949) 936-5171 또는 [TimothyTatum@iusd.org](mailto:TimothyTatum@iusd.org) 입니다.

학부모는 절차상 안전조치 (Procedural Safeguards)의 사본을 받았습니다.

학부모 서명

날짜